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13
----------	-----

2023. 10. 18.(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10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0월 16일

-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형근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밀레니엄타운 내 토지를 매입하여 도서관과 복합문화시설(공연장) 조성을 통해 문화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공연 등 도민의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규모는 1필지 19,766㎡(도서관 건립 부지 7,000㎡, 문화복합시설 마련 예정 부지 12,766㎡)이며, 사업비는

약 155.5억원임

- 충북대표도서관 신축은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하여 도내 도서관 협력기반 구축과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보존, 정책 연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밀레니엄타운 내 도 대표도서관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건축연면적 6,500㎡(지하1, 지상4), 342억원임
-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는 청남대 산림자원의 관광활용과 대청호반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남대 주차장에서 전망대에 이르는 350m 구간에 다목적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1,750㎡, 39.5억원임
- 보은소방서 청사 증축은 근무인원 증원(64→116명)으로 사무공간 및 훈련 등을 위한 필수 공간이 협소하여 기존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증축면적 693.39㎡, 약 28.7억원임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 용 도 : 대표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3-13번지 일원(밀레니엄타운 내)
- 사업기간 : 2024.
- 소요예산 : 약 155.5억원

- 사업규모 : 19,766m² ※ 도서관(7,000m²) + 문화복합시설(12,766m²)
- 계약방법 : 조성원가에 의한 수의계약 (단가 786,500원/m²)

《충북대표도서관 신축》

- 용 도 : 도립 대표도서관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3-13번지 일원(밀레니엄타운 내)
- 사업기간 : 2023. 8. ~ 2027. 5.
- 소요예산 : 342억원
(공사비 30,300,000천원, 설계비 1,900,000천원, 감리비 2,000,000천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6,500m²(지하1층, 지상4층)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 25-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 사업규모 : 1,750m²(L=350m, B=5m) / 40인승
- 사 업 비 : 39.5억원
(시설비 3,700,000천원, 설계비 197,000천원, 감리비 53,000천원)

《보은소방서 청사 증축》

-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96-8번지
- 사업기간 : 2023. ~ 2024.
- 소요예산 : 약 28.7억원
(시설비 2,359,182천원, 감리비 492,514천원, 시설부대비 12,959천원)
- 증축규모 : 693.39m² 증축(2층 123m², 3층 570.39m²)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
 - 충북대표서관이 밀레니엄타운에 건립될 예정으로 대표도

서관 건립부지 7,000㎡와 복합문화시설(공연장) 마련 예정 부지 12,766㎡를 매입하는 것임.

- 현재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공연장 등을 포함하는 문화공간 사업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나의 공간 또는 인접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밀레니엄타운 내에 충북대표서관 건립에 맞춰 공연장, 미술관 등 복합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정책은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 됨.
-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연 등 도민의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복합문화시설 마련 예정 부지에 어떠한 문화시설들로 채워 복합기능의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충북대표도서관 신축 건

- 대표도서관 운영은 「도서관법」 제25조, 「충북대표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임.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광역자치단체는 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설립 중이고, 충청북도와 강원도만 유일하게 설립하지 않고 관할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대표도서관은 도내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지역 문화생활소통의 중심이 되는 공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대표도서관을 건립하여 공공서비스 및 도서관 정책수립 도내 공공도서관 지원·협력, 자료보존 등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건

- 청남대는 준공 후 보안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었고, 청남대 이양 후 보안목적이 상쇄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제가 준치 되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관광지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과도한 규제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관광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청호반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청남대 전망대에 교통약자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목적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
- 모노레일 설치에 따른 관광효과는 타 지역의 유사사례 검토결과 설치 후에 방문객 수가 증가하여 관광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는 청남대 관광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침체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며, 산림 보호와 관리의 공공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모노레일 설치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협의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모노레일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보은소방서 청사 증축 건

- 보은소방서 현 청사는 2006년 119안전센터로 신축하여 2014년 보은소방서 개서를 위해 약 100여명 인원을 고려하여 증축하여 개청하였음.
- 2023년 9월 현재 현원 170명(정원 180명)으로 2014년 개청 당시 대비 80%의 인원 증가 소방차량 14대에서 21대로 증가하여 인원대비 청사 수용공간, 소방장비(화재, 구조, 구급) 보관시설 부족, 소방차고, 회의실, 직원대기실, 사무실 등이 매우 협소한 상황임.
- 이러한 청사의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자 기존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3층 증축에 따른 건물의 내진 등 안정성 확보와 건물 용도상의 허용 가능 기준을 만족하는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판단됨.
- 청사 증축은 근무환경 개선, 부서별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각종 현장출동 체계확립 및 업무 효율성 증대, 근무환경 개선 등 원활한 소방업무와 청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13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밀레니엄타운 내 토지를 매입하여 도서관과 복합문화시설(공연장) 조성을 통해 문화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공연 등 도민의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규모는 1필지 19,766㎡(도서관 건립 부지 7,000㎡, 문화복합시설 마련 예정 부지 12,766㎡)이며, 사업비는 약 155.5억원임
- 충북대표도서관 신축은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하여 도내 도서관 협력기반 구축과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보존, 정책연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밀레니엄타운 내 도 대표 도서관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건축연면적 6,500㎡(지하1, 지상4), 342억원임
-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는 청남대 산림자원의 관광활용과 대청호반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남대 주차장에서 전망대에 이르는 350m 구간에 다목적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1,750㎡, 39.5억원임
- 보은소방서 청사 증축은 근무인원 증원(64→116명)으로 사무공간 및 훈련 등을 위한 필수 공간이 협소하여 기존 1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증축면적 693.39㎡, 약 28.7억원임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일반회계

- 용도 : 대표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3-13번지 일원(밀레니엄타운 내)
- 사업기간 : 2024.
- 소요예산 : 약 155.5억원
- 사업규모 : 19,766㎡ ※ 도서관(7,000㎡) + 문화복합시설(12,766㎡)
- 계약방법 : 조성원가에 의한 수의계약 (단가 786,500원/㎡)

《충북대표도서관 신축》

일반회계

- 용도 : 도립 대표도서관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3-13번지 일원(밀레니엄타운 내)
- 사업기간 : 2023. 8. ~ 2027. 5.
- 소요예산 : 342억원
 - 공사비 30,300,000천원, 설계비 1,900,000천원, 감리비 2,000,000천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6,500㎡(지하1층, 지상4층)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일반회계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 25-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 사업규모 : 1,750㎡(L=350m, B=5m) / 40인승
- 사업비 : 39.5억원
 - 시설비 3,700,000천원, 설계비 197,000천원, 감리비 53,000천원

《보은소방서 청사 증축》

특별회계

- 위치 :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96-8번지
- 사업기간 : 2023. ~ 2024.
- 소요예산 : 약 28.7억원
 - 시설비 2,359,182천원, 감리비 492,514천원, 시설부대비 12,959천원
- 증축규모 : 693.39㎡ 증축(2층 123㎡, 3층 570.39㎡)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필지	19,766	15,545,959				
	건물	1개동	6,500	34,200,000				
	기타	1식	1,750	3,950,000				
1	토지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3-13 일원	19,766	15,545,959	2024	도서관 등 복합 문화공간 조성	충북개발 공사	매입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3-13 일원	6,500	34,200,000	2027	충청북도 대표 도서관 건립		신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 25-2 일원	1,750	3,950,000	2024	모노레일 설치		축조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1개동	693.39	2,864,655				
	기타							
1	토지							
	건물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96-8	693.39	2,864,655	2024	보은소방서 청사 증축		증축
	기타							
2	토지	이하여백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p>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